대구역 오페라 더블유 오피스텔 입주자모집공고

Wonderful Citylife
대구역 오페라 더블유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건전한 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보유여부 및 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일은 2019.10.23.(수)입니다.
▣ 전매제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의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됨.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2호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 – 42559호(2019.10.22) 분양신고 수리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1가 104–2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24,622.8000㎡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 건축물연면적 : 183,803.7125㎡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2층 / 지상 27층, 오피스텔 1개동, 총 99실
▣ 주차대수 : 134대 (지하 1층~지하 2층 설치)
※ 지하 2층 주차장은 오피스텔 주차공간(84대)과 공동주택 주차공간(294대), 지하 1층 주차장은 오피스텔 주차공간(50대),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27대), 공동주택 주차공간(291대), 지상 1~3층 공동주택 주차공간(737대)이 별도로 설치되며,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과 공동주택 주차공간은 분리되어 있음.

▣ 건축물 층별 용도

구분	용도
지하 2층	주차공간,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우수조, 오수조
지하 1층	주차공간,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우수조, 오수조
지상 1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공동주택), 어린이집(공동주택)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오피스텔),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작은도서관(공동주택), 주차공간(공동주택)
지상 3M층	주차공간(공동주택)
지상 3층	오피스텔, 공동주택, 경비실(오피스텔), 부대복리시설(공동주택), 경로당(공동주택)
지상 4~27층	오피스텔, 공동주택
지상 28~지상 45층	공동주택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적용되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 0.224g입니다.

▣ 공급대상

타입(주택형)	호실수	실별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약면적	실별 대지지분(㎡)
840A	49	84.8924	35.3462	6.3481	55.8744	182.4611	20.7938
840B	25	84.9243	35.0314	6.3505	55.8954	182.2016	20.8017
840C	25	84.9168	35.0425	6.3499	55.8905	182.1997	20.7999

※ 각 호실별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부대복리시설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기/기계실, 방재실, MDF실, 피난안전구역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함
※ 각 호실별 공용면적은 본 오피스텔 전체의 공용면적을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공용면적이 해당호실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각 호실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본 건축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이 함께 계획된 복합시설로서 시설별 대지지분은 각 시설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오피스텔 각 호실별 대지지분은 각 호실의 전용 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호실별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계약면적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평 = ㎡ x 0.3025 또는 ㎡ ÷ 3.3058)
※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각 호실별 대지지분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타입(주택형)	공급세대수	동별 안내	층별	해당세대수	공급금액 계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약금(10%) 1차 계약시	2차 2019.12.03	중도금(50%) 1회차 2020.08.03	2회차 2021.07.03	3회차 2022.05.03	4회차 2022.09.03	5회차 2023.01.03	잔금(40%) 입주지정기간
840A	49	106동 2호	4층	1	279,000,000	88,164,000	173,487,273	17,348,727	10,000,000	1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111,600,000
			5층	1	282,000,000	89,112,000	175,352,727	17,535,273	10,000,000	1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112,800,000
			6층	1	285,000,000	90,060,000	177,218,182	17,721,818	10,000,000	1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114,000,000
			7층	1	288,000,000	91,008,000	179,083,636	17,908,364	10,000,000	18,8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115,200,000
			8층	1	291,000,000	91,956,000	180,949,091	18,094,909	10,000,000	1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116,400,000
			9층	1	294,000,000	92,904,000	182,814,545	18,281,455	10,000,000	1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117,600,000
			10층	1	295,000,000	93,220,000	183,436,364	18,343,636	10,000,000	1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118,000,000
			11~15층	5	296,000,000	93,536,000	184,058,182	18,405,818	10,000,000	1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118,400,000
			16~20층	5	298,000,000	94,168,000	185,301,818	18,530,182	10,000,000	1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119,200,000
			21~27층	7	299,000,000	94,484,000	185,923,636	18,592,364	10,000,000	1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119,600,000
		106동 4호	3층	1	271,000,000	85,636,000	168,512,727	16,851,273	10,000,000	1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108,400,000
			4층	1	273,000,000	86,268,000	169,756,364	16,975,636	10,000,000	17,300,000	27,300,000	27,300,000	27,300,000	27,300,000	27,300,000	109,200,000
			5층	1	276,000,000	87,216,000	171,621,818	17,162,182	10,000,000	1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110,400,000
			6층	1	279,000,000	88,164,000	173,487,273	17,348,727	10,000,000	1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111,600,000
			7층	1	282,000,000	89,112,000	175,352,727	17,535,273	10,000,000	1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112,800,000
			8층	1	285,000,000	90,060,000	177,218,182	17,721,818	10,000,000	1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114,000,000
			9층	1	288,000,000	91,008,000	179,083,636	17,908,364	10,000,000	18,8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115,200,000
			10층	1	289,000,000	91,324,000	179,705,455	17,970,545	10,000,000	1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115,600,000
			11~15층	5	290,000,000	91,640,000	180,327,273	18,032,727	10,000,000	1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116,000,000
			16~20층	5	292,000,000	92,272,000	181,570,909	18,157,091	10,000,000	1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116,800,000
			21~27층	7	293,000,000	92,588,000	182,192,727	18,219,273	10,000,000	1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117,200,000
840B	25	106동 1호	3층	1	273,000,000	86,268,000	169,756,364	16,975,636	10,000,000	17,300,000	27,300,000	27,300,000	27,300,000	27,300,000	27,300,000	109,200,000
			4층	1	276,000,000	87,216,000	171,621,818	17,162,182	10,000,000	1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110,400,000
			5층	1	279,000,000	88,164,000	173,487,273	17,348,727	10,000,000	1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111,600,000
			6층	1	282,000,000	89,112,000	175,352,727	17,535,273	10,000,000	1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112,800,000
			7층	1	284,000,000	89,744,000	176,596,364	17,659,636	10,000,000	1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113,600,000
			8층	1	287,000,000	90,692,000	178,461,818	17,846,182	10,000,000	1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114,800,000
			9층	1	290,000,000	91,640,000	180,327,273	18,032,727	10,000,000	1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116,000,000
			10층	1	292,000,000	92,272,000	181,570,909	18,157,091	10,000,000	1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116,800,000
			11~15층	5	293,000,000	92,588,000	182,192,727	18,219,273	10,000,000	1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117,200,000
			16~20층	5	294,000,000	92,904,000	182,814,545	18,281,455	10,000,000	1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117,600,000
			21~27층	7	296,000,000	93,536,000	184,058,182	18,405,818	10,000,000	1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118,400,000
840C	25	106동 3호	3층	1	274,000,000	86,584,000	170,378,182	17,037,818	10,000,000	1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109,600,000
			4층	1	277,000,000	87,532,000	172,243,636	17,224,364	10,000,000	1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110,800,000
			5층	1	280,000,000	88,480,000	174,109,091	17,410,909	10,000,000	1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112,000,000
			6층	1	283,000,000	89,428,000	175,974,545	17,597,455	10,000,000	1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113,200,000
			7층	1	286,000,000	90,376,000	177,840,000	17,784,000	10,000,000	1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114,400,000
			8층	1	289,000,000	91,324,000	179,705,455	17,970,545	10,000,000	1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115,600,000
			9층	1	292,000,000	92,272,000	181,570,909	18,157,091	10,000,000	1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116,800,000
			10층	1	293,000,000	92,588,000	182,192,727	18,219,273	10,000,000	1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117,200,000
			11~15층	5	295,000,000	93,220,000	183,436,364	18,343,636	10,000,000	1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118,000,000
			16~20층	5	296,000,000	93,536,000	184,058,182	18,405,818	10,000,000	1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118,400,000
			21~27층	7	297,000,000	93,852,000	184,680,000	18,468,000	10,000,000	19,7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118,800,000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람.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해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 ·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 · 호수로 당첨자를 선정함.

▣ 분양금액 및 납부일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층수는 해당 타입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함)
※ 상기 오피스텔의 분양금액은 타입, 층, 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하였으며, 분양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내 분양사무소로 확인하시기 바람

▣ 공통유의사항

- 분양금액에는 각 타입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양금액은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미포함 기준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1차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 이후부터 받습니다.(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 금액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해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오피스텔의 실별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및 공용면적(기계실, 펌프실, 전기/발전기실,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MDF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주차장 및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판매시설은 별도 공급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도금대출을 원할 경우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본 오피스텔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오피스텔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본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및 법인에 한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청약접수 방법은 당사 견본주택 내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1인당 타입별 1개 호실까지 청약 가능하며, 당 사업지는 1인당 최대 3개 호실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단, 동일인이 동일 타입에 2개 호실 이상 중복신청하거나, 3개 호실을 초과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분양신청은 "타입"에 따라 접수하고, 층 · 호수는 견본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 신청자의 착오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관계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개별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http://dg-w.co.kr)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분	오피스텔 모집공고	청약일	추첨 및 당첨자발표일	계약일	당첨자 및 호실 선정방법
일정	2019.10.23.(수)	2019.11.02.(토)	2019.11.03.(일)	2019.11.04.(월)	–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에 의해 당첨자 및 호실을 결정함 (추첨에 의한 무작위 결정) – 당첨자 확인은 홈페이지 개별조회 및 견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일시	–	10:00~18:00	14:00	10:00~15:00	
장소	분양홈페이지 (http://dg-w.co.kr)	당사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번지)	당사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번지)	당사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번지)	

※ 추첨 및 당첨자 발표는 청약신청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확인은 분양홈페이지에서 개별조회 및 견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청약신청금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청약신청금 납부계좌번호	예금주
100만원	청약신청계좌에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13–2012–5851–08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며, 청약자 전원(낙첨자 및 당첨자) 일괄 환불 됩니다.
※ 무통장 입금시 청약타입 및 청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840A을 청약한 홍길동 → 840A홍길동)
※ 청약신청자와 청약신청금 납부인은 동일인이어야 하며, 타인 명의 입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금을 무통장 입금하신 분도 필히 견본주택에 입금증 제출하고, 청약신청서를 작성하셔야 적격 청약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 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분양사무소, 시공사 및 제3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입금 또는 지급하는 방법으로 청약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 · 형사상의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 당일 다수의 청약 접수로 청약 접수 마감이 지연되는 경우, 공급일정에 표기된 시간 내에 견본주택에 입장한 청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접수가 진행됩니다.

▣ 청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견본주택 내 비치) • 본인도장(또는 서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신청금 납입영수증 (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사본 1부(청약신청인 명의)
법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견본주택 내 비치) •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청약신청금 납입영수증(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사본 1부(청약신청법인 명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배우자 신분증 및 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신청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도장

▣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

- 환불기간 : 당첨자발표일로부터 3주 이후부터 순차적 환불
- 환불대상 : 청약자 전원 [낙첨자 및 당첨자(미계약자 포함) 일괄 환불]
- 환불방법 : 청약신청 시 제출한 청약 신청자 명의의 환불용 계좌로 온라인 입금됩니다.
(단, 계좌오류 및 환불 불가한 계좌 제출로 환불이 안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구비서류(환불용 계좌 미제출자)

구분	구비사항
본인	1. 청약신청접수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청약신청 시 사용한 도장 또는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제3자 대리인	1.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2.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환불 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하며, 계좌오류 및 환불계좌로 인해 환불 불가 또는 지연 환불의 경우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경쟁률이 높을 경우, 청약금 환불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 계좌오류 등의 경우에 추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불 지연에 대한 기간이자는 미적용되므로 청약 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공급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층수, 향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의 영향, 사생활이나 일조, 조망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Ⅲ 계약일정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계약기간	계약체결장소
2019.11.04.(월) (10:00~15:00)	당사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번지)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사업주체 임의로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시	• 청약신청접수증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및 입금확인서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1부 (용도:오피스텔 계약용)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법인 계약시	• 청약신청접수증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및 입금확인서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용도:오피스텔 계약용)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 지참
제3자 대리계약 시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본인 발급용] (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견본주택 내 비치) 1통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도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분양광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공급대금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부산은행	113–2012–5851–08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본 · 지점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관련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2동503호 홍길동 →1020503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에 따라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고,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나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대출신청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인지대 등)은 계약자가 부담)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신청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청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단지 내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 · 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부득이하게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청약 및 계약신청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계약 호실에 대한 호수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관계자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본 오피스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호실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일부 호실은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지상철,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오피스텔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오피스텔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오피스텔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 등)에 따른 중도금대출 비율 축소 및 불가시 시행자, 시공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시 시행자 및 시공자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 및 이자 부담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분양자가 책임짐.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시행자 및 시공자가 중도금 대출은행 알선 불가시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계약시 회차, 일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자(분양, 입주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며 계약자(분양, 입주자)는 이의 없이 승낙하여야 합니다.
- 양도받은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반 보증(부담금대출보증, 사업비대출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분양보증 등)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더하여 기타 사업정산 후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 오피스텔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Ⅳ 추가선택품목 계약

▣ 추가 선택 품목 (유상옵션)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변경사항	구 분	840A	80B	80C
바닥마감재 변경	• 강마루 → 유럽산 타일	금 액	1,100,000	1,200,000	1,200,000
		계약금 (계약시)	500,000	500,000	500,000
		잔 금 (입주시)	600,000	700,000	700,000

※ 상기 추가옵션은 해당 타입만 선택이 가능하며,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옵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산정 시 해당 미시공 금액을 감안하여 산정함.

▣ 추가선택품목 계약 금액 납부

공급대금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납부계좌	부산은행	113–2012–5901–04	아이에스동서(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함으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상기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유의사항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타입별 품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Ⅴ 유의사항

▣ 일반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함.
- 각종 홍보물상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바람.
- 각종 제작물은 광고 · 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 된 최종 사업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으로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법 제9조의 2 및 시행령 제5조,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됨.
-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는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구조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오피스텔의 관리 시스템 중 일부는 공동주택의 관리 시스템과 통합되어 사용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840A, 84A, 84D, 84E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밖의 주택형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건립타입 외 견본주택 미건립타입의 내부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평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견본주택의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E/V의 인승 · 속도 ·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음.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분양가 미포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 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설비

- 세대에 따라 전/후면 발코니 혹은 실외기실 상부에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나, 별도의 천장이 설치되지 않아 노출됨.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여야함.
- 실외기실의 공간이 협소하여 일부 제품의 경우 2단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2단 설치용 가대는 제공되지 않음)
- 실외기실 상부에는 주방 배기를 위한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난방을 위한 온수 공급은 개별보일러를 이용하여 공급함.
- 일부 유니트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전기

- 당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환기구(급/배기용),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관계법령 및 설계도면 기준에 맞추어 설치됨.(본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단자함,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월패드, 주방TV, 욕실스피커폰 등의 전화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함.
- 일부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세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음.

▣ 조경

- 인허가관청의 인허가 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건축 심의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조경수와 조경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대지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수와 조경시설의 위치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단지 옥외공간의 조화 등에 따라 선형이나 포장과 시설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음.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대구역 오페라 W 준공은 2023년 05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준공 이전 및 입주 후 기반시설(도로, 녹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 시설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조망권 등의 환경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 (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 · 주차장 · 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 ·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지 인근의 신설 · 확장도로는 인 · 허가 추진 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와 주변 도로 사이에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에 근접한 모든 동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공원 및 도로 등은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조성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구역 오페라 W 사업지 주변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간,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경정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당사 아파트 입주민 자녀의 초 · 중학교 배정은 초등학교의 경우 달성초등학교(행정구역:서구)로 배치 예정이며, 중학교는 6학교군(북구권) 분산배치 가능 예정, 고등학생은 단일학군 (광역배정) 및 일반학군 (1학군) 내 분산배치 가능 예정이나 학교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미개교시 인근 학교로 분산 배정될 수 있음.
- 초등학교 배치 및 미신설로 인한 민원은 관할 관청(시, 구청 등)에 제기할 수 없으며, 초등학교 신설은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 결과에 확정되는 사항이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학생배치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해시설,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본 오피스텔 단지는 도로 (북측 28m, 동측 13m, 남측 12m, 서측 20m)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부담이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 단지 북측 대구복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되어 있어 소음, 야간눈부심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변 설치되는 보도는 향후 공공시설물로 유지 · 관리될 수 있도록 준공 전 기부채납 및 토지사용권리를 포기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시계획시설(철도 등)에 따른 유의사항

- 본 아파트 단지 남측 도로변에 인접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등)로 인해 소음, 야간눈부심, 진동, 분진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남측변에 인접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등)로 인해 추후 방음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방음시설의 종류(방음벽, 완충녹지 등), 설치 위치 및 형태 등은 관련기관과 인 · 허가관청 협의과정 중 미설치 · 변경 될 수 있음.
- 방음시설 등의 설치로 이와 인접한 세대(101동, 102동, 103동)는 조망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확인 후에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향후 발생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등)의 소음 및 진동 등 모든 민원에 대하여, 향후 한국철도시설공단, 관할 관청 등으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 내부여건

- 본 단지의 동 표시, 동 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입주 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목적물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 체결 이후에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오피스텔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 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외관개선 또는 인허가조건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야간조명 효과, 야간 차량 진출입시,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오피스텔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각 동의 외창부 벽에 입면의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설물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 된 최종 사업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휴게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광장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경비실, 주민공동시설의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등 및 세대 상호 간의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옥외 및 지하주차장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D/A(설비 환기구), Top-Light, 조경시설물 등이 노출되어 저층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 소음,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Top-Light, 근린생활시설,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집적소, 자전거보관소, D/A(설비 환기구), Top-Light, 등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성에 대하여 견본주택에 비치한 건축도서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 차량출입구는 단지 남측 12m 도로에 출입구#1, 동측 13m 도로에 출입구#2에 위치해 있으며, 보행자 전용 출입구는 단지 남측 12m 도로에 3개소, 북측 28m 도로에 3개소, 서측 20m 도로에 2개소, 동측 13m 도로에 2개소 위치해 있음.
- 오피스텔 및 상가 차량 출입구는 서측 20M도로에 위치해 있으며, 오피스텔 주차장은 별도 구획되어 공동주택으로 진입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및 비상차량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차량조명,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보행 및 비상차량 통행로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진입은 불가능하며, 단지 내 도로(보행 및 비상차량 동선) 및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차량 이동시 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고층아파트 특성 및 분할창호 설치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또한,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각 동의 진입층, 피로티 및 어린이놀이터 등 오픈 스페이스의 내 외부인에 의한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등) 통행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진입부(동출입구)는 지반 레벨 등 여건에 따라 구조형식 및 형태, 크기 등이 서로 상이하니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여야 함.
- 전기, 통신 인입시 단지내부에 가공지역은 전주가 설치되고, 지중지역은 전기 개폐기 및 통신 맨홀이 설치되어 인입함.
- 각 동 진입부(1,3층) E/V홀 및 복도의 내부 구성 및 평면은 편의성 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해 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공동주택(아파트)과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계약자는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의 내부구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의 집기는 시공, 설치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 된 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업으로 신고 · 운영할 수 없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기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운동시설(골프장연습장, 휘트니스센터 등), 보육시설, 경로당,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저수조,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각각의 용도별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 용도별 해당시설 입주민의 공동 시설물임.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을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2018년12월24일) 및 시행(2019년6월25일)에 따른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함.
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 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실제 적용은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2019년 9월 25일)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실별 배치 및 평면 구성은 편의성 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오피스텔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 (아파트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추후 건축 설계변경이 될수 있으며, 세부용도, 층별 구성, 입점 업종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환기 시스템 및 공조 시스템 등으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열기 등에 의한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입점 시기는 아파트 입주 시기와 상이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서측 20m 계획도로에 면하여 101동/ 106동 하부, 북측 28m 계획도로에 면하여 104동, 105동, 106동 하부에 위치해 있으며 저층 일부 세대가 소음, 냄새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서측 오피스텔 출입구를 통한 지하 1층에 총 27대 계획되어 있으며, 진-출입동선은 아파트 차량동선과 분리되어 별도로 사용됨.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입주민은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 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 및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 주차공간

- 오피스텔 주차장은 134대로 배치되어 있음.
- 오피스텔의 주차구획(주차장)은 공동주택 주차구획과 분리되어 있으며, 별도 출입구를 사용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진입가능 높이는 2.3m이하임.
- 지하주차장은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름.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진입도로에 근접하여 3개소의 지하주차장 진출입구가 설치되며, 남측 진입도로에 근접되어 있는(101동,102동,103동) 저층부 세대, 동측 진입도로에 근접되어 있는(103동,104동) 저층부 세대, 서측 진입도로에 근접되어 있는(101동,106 동)저층부 세대의 차량조명,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전기차 충전시설은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동별 설계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106동 (오피스텔)	• 정면에 쓰레기분리수거장, Top-Light 및 DA가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 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정면에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및 벽천이 배치되어 있으며, 북서측 하부에 공개공지가 조성되어 저층 일부세대가 야간 눈부심 및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북측, 서측 하부에 배치된 상가 및 휀룸, 실외기실로 인해 저층 일부 세대가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정면, 측면에 보행자통로 및 비상차로가 배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지하층에 제연 휀룸, 1층에 방재실, 2층에 오피스텔 부대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저층부 세대에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북측 28m, 서측 20m 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야간 눈부심 현상,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카탈로그와 견본주택의 CG,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실공사시 공사여건 및 심의인허가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면구조상 동일한 주택형(TYPE)이더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람.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 바람.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 외부창호(유리포함)는 추후 BAR SIZE 및 규격, 하드웨어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강화천연석의 경우 자연적인 무늬로 인하여 흠집, 결, 무늬, 이색 등이 있을 수 있음.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날개벽체 등의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욕실장 후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아니함.
- 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 고정형 가구 하부, 측면 및 후면에는 도배지 마루판 등의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아니함.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및 다용도실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공사 시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으며, 욕실장 뒷면은 타일 시공을 하지 않음.
- 본공사 시 천장들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다용도실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PL창호의 성능(단열, 결로방지, 기밀성, 내풍압 등) 이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유의사항

- 정당 당첨자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대구시 북구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오피스텔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오피스텔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오피스텔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기본형, 확장형 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향후 소방법 준수를 위한 소방설비 및 제연 시설물의 위치 및 개수 등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사양 및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시설물, 식재, 포장 등은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에 의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의 허가 없이 견본주택 내 무단 사진촬영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계약자일 경우라도 허가 없이 촬영할 수 없음.
- 하자담보존속기간은 건축법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적용되며 하자의 판정 기준도서는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함.
- 하자 등에 따른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름.
- 같은 주택형 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 전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 개시일 약 1개월 전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도배공사, 도장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가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방문을 진행할 예정.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 안내를 통해 공지할 예정임.

▣ 입주예정일 : 2023년 5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 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입주지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각 호실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에 가능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2312019–104–0000700호	₩17,315,400,000원	분양신고필증 교부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건축물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오피스텔입니다.**
-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합니다)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분양대행사
상호	아이에스동서(주)	아이에스동서(주)	(주)씨아이앤디플러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청담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청담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135–3 2층
법인등록번호	110111–0208383	110111–0208383	110111–5760643

▣ 견본주택 운영

견본주택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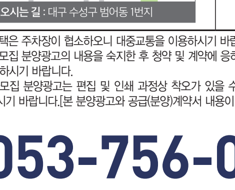

관련사항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번지
분양문의 : 053–756–0009
운영시간 : 평일, 주말 10:00 ~ 18:00
홈페이지운영안내 : http://dg-w.co.kr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본 분양광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분양문의 053-756-0009 | 시행·시공 아이에스동서